

의안번호	2217560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5. 7.
추계번호	26B1609

축산물의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억원(연평균 8,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150	-	-	-	-	150	30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안 제14조)	50	50	50	50	50	250	50
합계	200	50	50	50	50	400	80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례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및 사업실시 방법·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정보를 원활히 수집·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축산물 유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축산물 유통 체계의 정보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축산물 유통 시설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급 3. 축산물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축산물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4.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축산물 유통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6	안 제9조(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제1항) 1.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2. 축산물 소비실태 3. 축산물 경매정보 4. 축산물 공급 등 관련 해외동향 5.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정보	재량규정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및 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한국 축산유통진흥원)	축산물 유통, 제1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 가축·축산물 이력관리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을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4항) 1.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및 상담·지원 2. 축산물 유통에 관한 외국기술의 보급 3. 축산물 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등급판정 6. 등급판정에 관한 기술 개발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8.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축산물의 수출입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2. 그 밖에 축산물 유통, 등급판정 및 가축·축산물 이력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업 13. 표준거래계약서의 보급 및 계약생산·계약출하 관련 분쟁 예방·정보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 14. 축산물 수급관측 지원, 가격동향 분석 및 공표 지원 15. 축산물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8	안 제13조(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2.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3. 그 밖에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육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자격제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9	안 제14조(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1.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2. 도매시장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3.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거래하는 경우에 축산물 거래가격을 조사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1	안 제16조(표준 거래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축산물(「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는 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거래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2	안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안 제28조(인증 기관의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업무와 제3항에 따른 지정갱신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4	안 제30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의 경우에는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로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제1항)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조사	의무·재량 규정
15	안 제33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함(제3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34조(축산물 수급관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가축 사육동향, 가축전염병 발병상황, 도축물량, 출하물량,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수급관측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축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 수급관측 전담기관에 품목을 지정하여 축산물 수급관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7	안 제35조(계약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축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조건의 표준화,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이나 그 밖의 재원을 활용하여 계약금 대출 등 필요한 금융지원 또는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8	안 제36조(몰수 축산물등의 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축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 「검찰청법」 제11조 및 검찰 압수물 처리에 관한 법무부령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축산물(이하 “몰수축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받을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몰수축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 대금은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출하거나 납입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몰수축산물등의 처분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37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 및 「축산법」 제29조에 따른 종축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축산물 및 종축 등의 수입 추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함(제2항)	재량·의무 규정
20	안 제38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 축산물의 관리 및 부정유통 방지와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7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1. 수입 축산물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 2. 수입 축산물의 용도 제한 3. 수입 축산물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재량규정
21	안 제44조(가축 거래상인의 교육 의무)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제1항)	의무·재량 규정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 이상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야 함. 다만, 질병·휴업·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의무·재량 규정
22	안 제47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법」 제40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등 축산물 유통·가축거래 관련 서류의 열람, 발급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23	안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3	안 제6조(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이 가능하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7조(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5	안 제8조(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축산물 유통 정보 실용화 사업을 통해 유통 정보 수집·관리, 전자적 거래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으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축산물 품질관리 (3738-330)</td><td>축산업 관련 정보연계·통합 관리로 각 정보 활용도를 높여 축산정책·방역·환경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td><td>1,148</td></tr><tr><td rowspan="2">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3731-305)</td><td>축산물 유통·소비 환경의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축산물 수급·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td><td>695</td></tr><tr><td>축산물 품질·인증 등 정보의 통합 및 연계로 각종 증명서류 조회·발급을 간소화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유통 효율화 도모</td><td>560</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축산물 품질관리 (3738-330)	축산업 관련 정보연계·통합 관리로 각 정보 활용도를 높여 축산정책·방역·환경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1,148	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3731-305)	축산물 유통·소비 환경의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축산물 수급·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695	축산물 품질·인증 등 정보의 통합 및 연계로 각종 증명서류 조회·발급을 간소화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유통 효율화 도모	560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축산물 품질관리 (3738-330)	축산업 관련 정보연계·통합 관리로 각 정보 활용도를 높여 축산정책·방역·환경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1,148												
축산물유통정보 실용화 (3731-305)	축산물 유통·소비 환경의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축산물 수급·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 제공	695												
	축산물 품질·인증 등 정보의 통합 및 연계로 각종 증명서류 조회·발급을 간소화하여 행정비용 절감 및 유통 효율화 도모	56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6	안 제9조(실태조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대상,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실태조사 및 축산물 거래가격 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및 축산물품질관리 사업을 통해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항목 중 일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26예산</th><th>사업내용</th><th>비고</th></tr><tr><td rowspan="3">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3731-305)</td><td rowspan="3">6,630</td><td>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소비지 등 단계별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합리적 가격 결정 및 유통구조 개선·정책 수립 지원</td><td>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td></tr><tr><td>POS 데이터 수집·분석 및 소비자패널 운영으로 축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16개국 4개 축종의 축산현황 및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 축산물 수급정보 제공</td><td>축산물 소비실태(해외조사)</td></tr><tr><td>유통업체, 축산농가, 가공업체 등에 최종 낙찰가 및 정확한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준 마련</td><td>축산물 경매정보(경락가격)</td></tr><tr><td>축산물품질관리(3738-330)</td><td>59,773</td><td>기관 내 등급판정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통해 농가, 소비자 등에게 등급 정보 제공 축산물이력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이력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이력 데이터 제공</td><td>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td></tr></table> 주: 2026년 예산액은 해당 세부사업 전체 예산액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26예산	사업내용	비고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3731-305)	6,630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소비지 등 단계별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합리적 가격 결정 및 유통구조 개선·정책 수립 지원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POS 데이터 수집·분석 및 소비자패널 운영으로 축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16개국 4개 축종의 축산현황 및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 축산물 수급정보 제공	축산물 소비실태(해외조사)	유통업체, 축산농가, 가공업체 등에 최종 낙찰가 및 정확한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준 마련	축산물 경매정보(경락가격)	축산물품질관리(3738-330)	59,773	기관 내 등급판정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통해 농가, 소비자 등에게 등급 정보 제공 축산물이력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이력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이력 데이터 제공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사업명	'26예산		사업내용	비고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3731-305)	6,630		축산물의 산지·도매·소매·소비지 등 단계별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여 합리적 가격 결정 및 유통구조 개선·정책 수립 지원	축산물의 시장 거래가격															
			POS 데이터 수집·분석 및 소비자패널 운영으로 축산물 소비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16개국 4개 축종의 축산현황 및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 축산물 수급정보 제공	축산물 소비실태(해외조사)															
			유통업체, 축산농가, 가공업체 등에 최종 낙찰가 및 정확한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준 마련	축산물 경매정보(경락가격)															
축산물품질관리(3738-330)	59,773	기관 내 등급판정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통해 농가, 소비자 등에게 등급 정보 제공 축산물이력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이력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이력 데이터 제공	축산물 등급정보 및 이력정보																
10	안 제15조(축산물 거래가격의 조사·공개)																		
7	안 제10조(한국축산유통진흥원)	—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축산유통진흥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8	안 제13조(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내용</th><th>'26예산</th></tr><tr><td>축산물유통 정보실용화 (3731-305)</td><td>축산물유통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운영체계 마련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유통분야 교육 활성화 및 축산 종사자 역량 강화</td><td>70</td></tr></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축산물유통 정보실용화 (3731-305)	축산물유통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운영체계 마련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유통분야 교육 활성화 및 축산 종사자 역량 강화	70
사업명	사업내용	'26예산							
축산물유통 정보실용화 (3731-305)	축산물유통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운영체계 마련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유통분야 교육 활성화 및 축산 종사자 역량 강화	70							
9	안 제14조(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11	안 제16조(표준 거래계약서)	—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2	안 제22조(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42조의3과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3	안 제28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42조의8과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4	안 제30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42조의10과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5	안 제33조(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32조의4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16	안 제34조(축산물 수급관측)	—	• 미대상: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축산물 수급 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2026년도 예산 약 192억원)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7	안 제35조(계약 생산)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계약생산 등의 장려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에 따른 지원 기준·내용·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8	안 제36조(물수출산물등의 이관)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향후 발생할 물수출산물등의 두수, 물수출산물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19	안 제37조(축산물 등의 수입 추천 등)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30조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0	안 제38조(수입 축산물의 관리)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31조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1	안 제44조(가축거래상인의 교육의무)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2	안 제47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	미대상: 현행 「축산법」 제40조의2와 동일한 조항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3	안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 5,000만원(연평균 3,000만원)으로 추계
 - － 추계기간 중 첫해에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연도	금액
2023~202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2	160
동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기초조사 및 기준·방안 등 마련	2024	140
평균		1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3]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 기본계획	150	—	—	—	—	150	3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축산물 유통 및 가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안 제14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1.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2. 도매시장·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3.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사업과 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을 제외하고 본 추계에서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표 4]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내용	2025	2026
축산물시설현대화 (3076-332,346)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	133,517	142,653
축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3731-308)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축산물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원격지에서 온라인으로 경매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00	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 2회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해당 사업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한국축산유통진흥원(現 축산물품질평가원) 지원(10개소)을 통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2,500천원(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x 10개 권역 x 2회(상·하반기) = 50백만원
 - ※ 이때,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2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0	50	50	50	50	250	50

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